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발의제도 개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1호)

2025.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안)	1
II . 검토의견	3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민 · 김준형 · 정춘생 · 강경숙 · 황운하 · 신장식 ·
이해민 · 서왕진 · 손 술 · 정혜경 · 전종덕 · 한창민 ·
최혁진 · 백선희 · 용혜인의원(15인)

나. 발 의 일 : 2025. 8. 6.

다. 회 부 일 : 2025. 8. 7.

※ 의안번호 : 120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

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안의 공동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u>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u> ⑤ (생략)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다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에는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대표발의의원 명시와 관련한 「국회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15대 국회까지는 대표발의의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나누어 발의의원의 이름은 전원 표기하고, 찬성의원의 이름은 생략하였음.

그러나 제16대국회부터는 법률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한 소위 ‘법률안 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2023년 7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경우, 최대 3인까지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2] 대표발의의원 명시 관련 국회법 연혁

~제15대국회	16대국회(2000.5.30.)~	2023.7.~
대표발의의원 명시X (발의의원 전원 표기)	대표발의의원 1인 명시	대표발의의원 3인까지 명시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발의의원을 2인 이상 명시하려면, 반드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비교섭단체 의원들끼리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명시할 수 있는 대표발의 의원의 수도 최대 3인으로 제한됨.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때도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과정에 있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발의의원에 2인 이상의 무소속의원(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포함될 경우, 그 중 1명만 대표 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인지, 각각 명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2023년 7월 법 개정 당시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었는데, 동 개정안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14